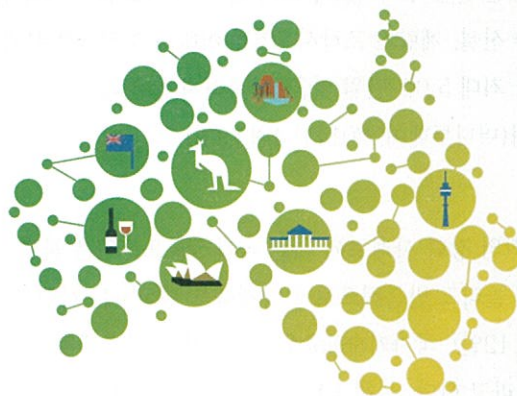


AUSTRALIA



호주 무역장벽의 특징 및 현황

호주 수출 관련 기업들은 수출가격 관리 등의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국이 대호주 상품 무역은 2011년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 규모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양국간 상품 무역 규모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양국간 상품 무역 규모는 303.5억 달러(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이며, 대호주 수출입액은 각각 95.36억 달러와 207.9억 달러로 11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광산물(38.0%, 주로 석유제품)과 기계류(29.3%), 철강금속제품(12.1%), 전기전자

제품(8.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78.3%, 주로 철광석 등 원료)과 농림수산물(11.5%)이다.

한·호주 투자관계를 보면, 호주의 대한국 투자액은 2014.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23.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외국인직접투자)에서 1.0%를 차지한다. 호주의 대한국 주요 투자업종은 음식·숙박(38.8%), 문화·오락(16.3%), 부동산·임대(15.6%) 등 서비스업 중심이며, 제조업에서는 운송기기(11.8%)에 대한 투자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OFDI(해외직접투자)는 2014.9월까지의 누적액이 101.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3.7%를 차지하는데, 대호주 투자 중 79.7%가 광산업에 시행된 것이며, 그 외 금융·보험(6.4%), 부동산·임대(3.5%), 유통(2.2%)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한·호주 양국간 FTA는 2013.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고, 2015.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 외에 양국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태양광패널

2013.1월 현재 수력 및 풍력에 의한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은 전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량의 12.1%에 달한다. 호주 정부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어서 향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 시장에서 Trina, Renesola, Suntech, Canadian, China Sunergy 등 중국의 5대 메이커에 의한 태양광 패널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버터를 비롯한 각종 부품의 중국산 사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저질 부품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설치 업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그 동안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규정 강화안을 Standards Australia를 통하여 예고하였다.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 부서인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산하의 호주의 약품관리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즉, 의료기기 판매의 경우 호주측 파트너가, 의료기기 수출의 경우 현지회사 및 에이전트가 등록해야 한다. 이때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 또는 수출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에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Australian registered company or business)를 지정(스폰서)하여 대신 진행해야 한다.

한편 선적 및 통관 시 TGA 승인 여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호주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TGA 승인 또는 ARTG 등록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으면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CE 인증이 있는 경우 ARTG 등록 절차는 매우 간소해질 수 있다. 그러나 CE 인증이 없는 경우 TGA를 통해 순응평가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하여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기타

무역구제조치

호주는 최근 2~3년 동안 다양한 국내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반덤핑조사 대응 및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¹⁾ 최근에는 호주의 반덤핑조치가 국내산 제지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호주 수출 관련 기업들은 수출가격 관리 등 세심한 대응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호주는 한국산 철강 4개 품목(철강재파이프, 열연코일, 아연 및 알루미늄 도금 강판,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중이며, 2개 품목(철근, 열연구조철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다.